

인천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2022가단265696 판결 [금속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청구금액 중 서울 관악구 C 금속공사대금 4,730,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9. 30. 피고로부터 D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4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2.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경 피고의 현장소장인 E와 이 사건 공사 대금을 기존보다 360,000,000원

증액한 1,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정산내역서는 현장소장이 정산을 위해 작성한 1차 서류에 불과할 뿐, 공무팀 등의 추가 검토를 거친 피고의 최종적인 정산이 필요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정산내역 산출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내역서는 E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에게 효력이 있거나, 적어도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을 제4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총 1,3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지급액은 당사자들 사이에 2021. 9. 3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정하였던 대금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 또한 당초 약정하였던 공사 범위를 초과하여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실 자체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② E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피고를 위한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시공물량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E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공사의 현황 파악과 함께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세부내역서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정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취지 참조)을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보면, E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정산할 권한을 보유하였거나, 설령 피고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E에게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도 E에게 ‘공사대금을 1차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권한’, 즉 기본대리권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④ E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 사실확인서(갑 제11, 14호증)에도 이 사건 공사 대금의 정산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공사 대금의 정산 절차를 ‘현장소장이 검토한 내용 중 금액이나 견적단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 현장소장에게 재정산을 요청하고, 현장소장은 그에 따라 협력업체와 금액을 재조정한 후 대표이사의 최종 결제를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현실적으로 정산재조정하는 것은 현장소장의 업무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같은 협력업체로서는 현장소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절차를 마친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정산합의액 1,400,000,000원 + 부가가치세 140,000,000원 - 기 수령액 1,3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